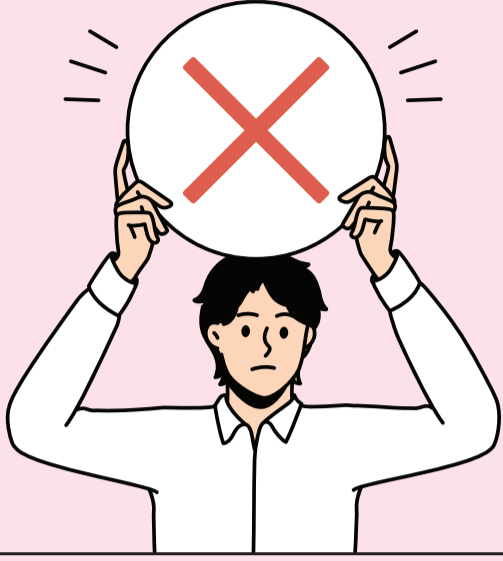


공인중개사법

1.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거나 개설등록을 신청한 행위

2. 자격증·등록증 대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3. 중개보수 초과수수



법정 수수료를 초과 요구하거나 다른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요구하는 행위

4. 중개사의 거짓언행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집값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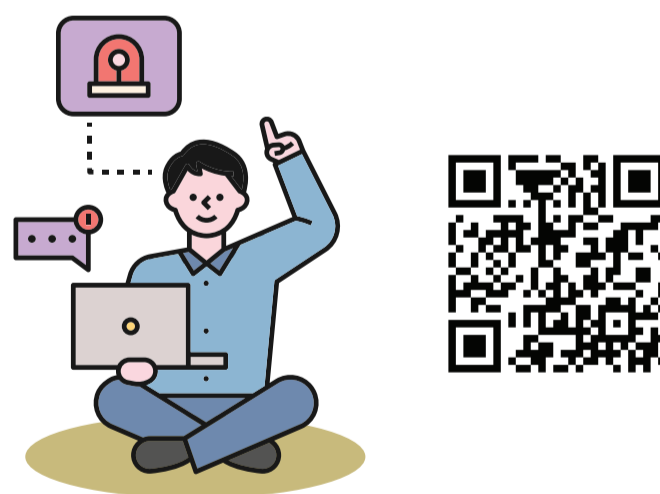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신고센터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접속하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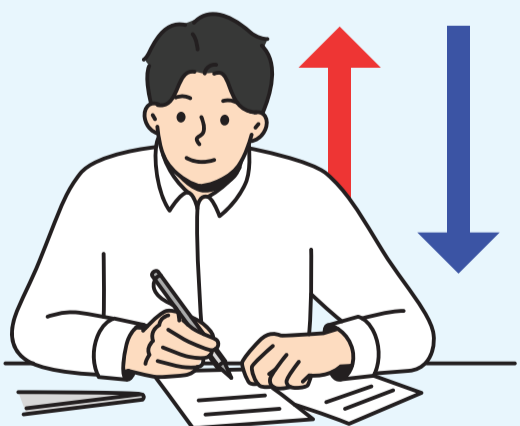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클릭"

www.budongsan24.kr

콜센터 **1644-9782**

거래신고법

6. 업·다운 계약신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

7. 허위거래 계약신고

전용면적(m2)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일자	거래금액
84	2X.3.1	O	2X.10.1	3.8억원
84	2X.2.1			3.1억원
84	2X.1.1			3.0억원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계약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